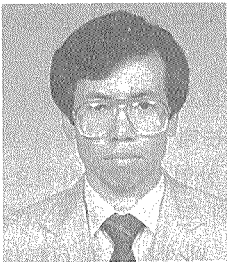


특허분쟁과 한·대만의 동향



이 상 근
본회 정보산업과장

1. 개 요

최근에 들어 세계적으로 기술의 혁신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상품의 변화는 물론 상품의 지식·기술 집약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은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전략차원에서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한 국가의 경제, 군사 등 비교 우위와 기업의 경쟁우위의 원천으로써 기술요인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들은 첨단 산업의 공업소유권,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80년대 들어오면서 재정 및 무역 적자로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변신, 대미 흑자국에 대해 수퍼 301조(종합무역법안) 337조(지적소유권 보호)를 적용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도 이러한 자국의 기술보호를 위해 통상협상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국제무역 환경하에서 수년전부터 우리나라와 새로운 통상마찰 분야로 떠오른 것이 첨단기술의 대표적인 지적소유권 보호 분쟁이다.

지적소유권 보호는 산업이 고기술화되고 정보사회가 확산됨에 따라 통신, 컴퓨터, 반도체 등 소위 첨단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향후 국가간 경쟁력이 기술 우위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기술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 특허보호 강화의 배경

첨단기술 보호 강화 움직임은 선진국들 특히 미국에 의해 일어났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세계 최대의 기술부국이었으나 외국인이 미국에

서 취득한 특허수가 급증하고 일본, EC 등의 맹렬한 기술개발 추격과 미국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과정에서 개발도상국 등에 이전된 기술에 의해 부메랑효과 등으로 미국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게 되어 첨단기술제품의 무역수지가 '80년대 이후 계속 악화되어 왔다. 즉 신규 기술 개발 속도보다도 기술이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긴 이러한 무역수지 유지를 위해 지적소유권을 산업발전의 관건으로 인지하고 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일본, 유럽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함으로써, 첨단산업기술 및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 논의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3. 지적소유권의 통상전략화

지적소유권의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도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지적 자산의 축적을 갖고 있는 미국은 이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확립하는냐에 따라 향후 미국산업의 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움직임은 통상전략으로써 성격을 갖는 동시에 무형의 기술전략인 것이다.

미국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선언」으로 지적소유권의 보호 강화를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고 막대한 투자를 해와 지식 축적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된 지적 자산도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하고 해외유출에 이어 권리보호가 되어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의해 복사, 모조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국 및 세계의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요소가 있는 것이다.

첫째로 미국은 경제구조가 탈공업화하여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제조업이 쇠퇴

하여 자국보다는 외국에서 생산하게 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즉 지식 및 정보의 상품화인 것이다

둘째로는 지적소유권을 국제통상과 연계시켜 나아가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지식을 근간으로 국제통상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지적소유권 문제가 GATT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기존의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세계저작권협약(UCC)^{*} 등의 한계가 인식되었고 무엇보다 이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 보호를 강화하여 무역증대를 기도하고 있는 데에 그 배경이 있다.

4. 한국의 지적소유권 분쟁사례

이러한 기술보호정책은 급기야 기술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일본기업의 대 IBM 산업스파이 사건으로 일본 산업계는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컴퓨터 산업에서 IBM은 세계시장의 60%(미국계 : 80%)를 점하는 기업으로서 국가독점 지배력이 있다. 일본은 세계 10%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70년대 부터 일본업체가 하드웨어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하여 '83년부터는 일본의 컴퓨터산업에서 무역흑자를 내게 되었고, 미국은 주변기기 분야의 열세로 점차 컴퓨터산업의 무역수지가 감소되자 일본이 열세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S/W기술 불법유출 저지 및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제소하게 된 것이 바로 IBM 산업스파이 사건이다.

또한 NC공장 기계의 공산권 수출금지 등 하이트크의 공산권 수출금지(COCOM) 제도를 제정토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수퍼 301조에 걸려 불공정 무역국가로 인정, 타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무역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적소유권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85년 10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상법 301조에 의한 제소 압력을 넣어 우리나라 특허법,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삼성전자와 미국 Texas Instrument 및 삼성반도체, 현대전자와 Intel간의 반도체 특허분쟁 등 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Microsoft사와의 MS-Dos사용료는 PC 1대당 10~20\$선을 지불하고 있으며, Phoeenix사의 Bios도 PC 1대당 5~10\$를 지불하는 등 지속적인 특허 및 S/W 저작권에 대한 많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최근 Texas Instrument, GE-RCA, Tandy 등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특허료 침해 주장과 이에 상응하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IBM 특허료 지불 현황

'87. 1. 14이전	'87. 1. 14~'88. 3. 31	'88. 4. 1~'88. 10. 20	'88. 10. 21이후	'89. 하반기
유럽지역 판매액에 대해 1%	국내외 판매액에 대해 1%	미국, 국내판매액 : 1% 유럽지역판매액 : 2%	국내판매금액 : 1% 미국판매금액 : 3% 유럽판매금액 : 2%	국내판매금액 : 2% 미국판매금액 : 3% 기타국 판매금액 : 2%

주요 PC, S/W 및 모니터관련 특허료 지불 현황

구분	특허권자	ITEM	계약내용 및 요구사항
계약	IBM	PC	NSP(Net Sale Price)의 2~3% (유럽 : 2% 미국 : 3%)
	MICROSOFT	S/W(MS-DOS)	PC 1대당 10~20불 (물량에 따라 업체간 차이가 있음)
	PHOENIX등 캐스트레	BIOS EGA·VGA (그래픽카드)	PC 1대당 5~10불 정액계약, 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10만불 내외 지불
	PI	PC	정액계약, 5~20만불 PC수출액의 7~8%
	협의중	TI	PC
협의중	GE-RCA TANDY 기타	컴퓨터관련기타 LAPTOP PC	NSP의 1.5~1.75% 요구 런닝 로열티 및 NSP의 1% 요구 업체별로 TANDON, ASCII등에서 특허료 요구

이로 인해 현재 밝혀진 특허료 지불만도 매출액의 7~10%에 상당하는 고율의 로열티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될 로열티를 더하면 10~15%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5. 대만의 지적재산권 분쟁사례

대만도 우리나라와 형편이 마찬가지로 최근 지적재산권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움직임과 관심이 널리 파급되고 있으며, 국내 제조회사들도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퍼져서 자기의 권리가 침해받았을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기 때문에 일련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송사건이 생겨나고 있다. 그 중에는 국내 제조회사들의 권리가 외국에서 침해받는 소송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일약 권리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전자회사 자체 상표를 보호하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어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정 및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법을 지키려는 습관의 배양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많은 외국제품을 모방한 사례가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컴퓨터 기술특허의 불법적인 침해 상황이 발생하여 지적재산권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만에서 발생한 지적소유권 분쟁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며 이러한 점을 우리는 유념하여 사전에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가. BSA (Business Software Alliance)의 복사금지조치

'90년도에 발생한 지적재산권 분류 중에서 가장 큰 주목 및 관심을 끌었던 것은 BSA의 S/W복사에 대한 금지조치이다. BSA는 처음부터 수차 기자회견을 열어서 불법적인 S/W복사를 단속한다는 결심을 표명하였지만, 시종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률행동은 취하지 않았

다.

'90년 4월에 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마침내 경찰과 함께 태평양전선전란, 미국ATARI 및 東元(TECO) 등의 회사에 대하여 단속조치를 취하여 DBASE III 및 LOTUS 1-2-3 등의 복사본을 압수했다. 금지조치를 당했던 회사는 모두 지명도가 높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각계에 적지 않은 관심을 일으켰다. 현재 태평양전선전란 및 BSA는 화해를 하였고, ATARI는 대북 지방검찰청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BSA에 금지조치를 당했던 대기업이 복사 S/W를 사용한다는 충격은 일반 회사로 하여금 감히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않고 관망하게 하고 자신도 또한 장래에 단속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여러번 자세히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내의 복사 S/W를 조사하여 원본 S/W로 바꿨다. 이에 따라 최대의 중국에 System 회사의 실적을 과거 동기의 3배가 되었다.

일찌기 회사에 대하여 금지의 행동을 취하기 전에 BSA는 이미 빈번한 움직임을 통하여 미국 S/W회사의 법률대표 및 BSA총재가 한조를 이루어 수차 대만을 방문하여 단속의 결심을 표명하는 외에 복사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책을 연구하고 논의하였다. '89년 10월에 다시 각급학교에 서신을 보내어 학교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복사 S/W를 사용하지 말 것과 그렇지 않으면 장래에 단속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원판 S/W를 사지않는 학교가 주로 크게 염려하여 심지어 어떤 학교는 컴퓨터 과정을 잠시 중지할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교육부'와 '외국 컴퓨터업자'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고 공감하여 학교가 컴퓨터 S/W & H/W의 예산을 배정하고 다른데로 전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단, 업자는 우수한 교육용 S/W를 학교에 공급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업자'공동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을 널리 개도시키는 것이다.

학교는 S/W경비의 엄청난 부족 및 예산 편

성제도의 제한때문에, 설사 곧 예산배정이 진행되어도 1년을 기다려야 경비를 배정받을 수 있다. 지급해결하기 위하여 鑿圃(Bonanza)회사는 술선수범하여 무료로 학교에 S/W를 공급하였는데 이는 많은 회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일시에 S/W업계에서는 학교에 S/W를 공급하는 풍조가 생겼다. '鑿圃(Bonanza)' '國喬(Kuo Chiau)' '倚天(Em)' '霧臺科技(Zzro One Technology)' '培基'전자와 '福斯興' 등의 많은 회사가 무료로 학교에 S/W를 공급했다.

나. '強榜(CMP)' 컴퓨터회사의 CMP상표는 '89년초에 서독에서 Stanford라는 서독회사에 의해 상표도용을 당하여 '強榜(CMP)'은 현지의 변호사를 청하여 Stanford를 고소한 후에 '문헌'지방법원에 '89년 7월에 '強榜(CMP)'이 승소하여 Stanford는 CMP문구가 있는 제품은 제조하거나 팔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強榜(CMP)'에게 총 복사제품판가의 15/100를 배상해야하고, 장래에 다시 '強榜(CMP)'의 권익을 침해하다면 50만 Mark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처음으로 대만회사가 서독회사의 복사된 컴퓨터제품을 고소하여 승소한 예인데, 대만제품이 국제시장에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 꽤나 떠들석했던 '武果'회사의 '電子所(ERSO)'가 개발한 컴퓨터 BIOS권리침해권은 쌍방이 '89년 7월에 화해를 하고 '武果'는 '電子所'에 대만 화폐로 200만원(元)을 지불하고 신문에 사과 보도를 하고 미국세관에 대하여는 검사를 취하한다는 등기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은 '武果'가 '電子所'가 개발한 BIOS를 소유하기 위하여 저작권 등기를 하고, 이를 근거로 미국세관에 복사품의 검사를 신청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회사들이 미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당한 것에 기인한다.

라. 미국 TANDY 컴퓨터회사는 '89년 11월에 Belgium의 잡지에 광고를 내고 대만 제품은 저급품이라고 모함을 해서 대만회사의 강렬한 반발을 일으켜서 근해의 경영의 양호한 사

정 등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자가 Brand 협회' '대북시 컴퓨터공제조합' '대북현 컴퓨터공제조합' 등은 이하의 반격을 하기로 공동으로 합의 하여

1. Belgium잡지에 공동으로 광고를 내고 Tandy의 지적사항을 해명하면서 대만 제품의 우수성을 선전하였고,
2. Belgium 언론매체의 종사자를 초청하여 실제의 대만사정을 이해하게 하고
3. 컴퓨터전람회 등의 적당한 기회 등을 선택하여 Belgium 등의 유럽국가에서 기자회견 등을 갖고
4. 공보부, 경제부, 외국무역협회 및 자가Brand 협회 등이 합작하여 세심하게 국제 시장에서 관련있는 대만산 제품의 홍보에 주의하여 대만제품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만났을 때 즉시 관련 산업 위기대책반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업자들이 처음으로 외국의 모함에 대하여 공동으로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한 것이다.

라. '全友(Micro Tek)' 및 '力捷(UMAX)'회사의 광학판독기 소송사건을 심리중인 '新竹'지방법원이 '90년 1월에 판결을 하여 결과는 '力捷(UMAX)'이 승소하고 '全友(Micro Tek)'의 고소는 기각 당했다. 그러나 이미 '全友'는 법에 의거하여 상소를 하였는데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다.

마. 미국 Apple컴퓨터회사는 '90년 3월말에 대북지방 검찰청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訊泰' 및 '五住'는 Apple컴퓨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내부구조가 Apple Mackintosh컴퓨터와 같은 H/W를 판매하였는데, 단 사용자는 여전히 Apple컴퓨터의 Rom과 작업 SYS. 등의 관련부품을 구입하여야 비로서 완전한 호환성있는 컴퓨터를 이룰수 있다. 본 건은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감정중에 있다.

바. '天岡科技' 및 '普全(Computer LAB)' 컴퓨터회사 사이에 Light-Pen방식에 대한 분

규가 발생하였다. '普全'회사는 '天岡이 '優美' 컴퓨터에게 공급하는 Light-Pen방식이 당회사의 제품을 복사한 것으로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색하도록 하였으나 수색시에 '優美'에게 공급하였던 Light-Pen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普全'은 계속 수색을 할 것을 외부에 공표했다. '天岡科技'는 고의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입한 Light-Pen을 상급관청으로 보내어 조사를 진행시키고 '普全'회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 '90년 4월에 IBM 대만지사는 Genoa Video Card를 구입했던 여러 회사에게 2개의 등기우편을 보내 Genoa의 Video Card의 EGA Bios가 IBM의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EGA Bios를 사용한 것은 Genoa의 권리를 위임받아 제공한 것으로 만약 Bios를 진정으로 IB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IBM이 응당 Genoa를 찾아서 배상을 요구하여야지 관계 없는 국내회사가 보상할 일은 아니다. 이것은 후에 IBM과 Genoa가 배상을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되었다.

자. 대만 대기업인 '宏基(Acer)'회사는 일찌기 생산하였던 컴퓨터 Key-Board에 사용한 BIOS가 IBM의 저작권을 침해하는데 주의하지 않아서 IBM의 배상의 목표가 되어 최후의 협의를 거쳐 US\$ 900만의 배상을 하기로 하고 5년에 걸쳐 나누어 내기로 하였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최초의 배상요구액은 US\$ 2,000이었다.

IBM은 시스템, 메인보드, EGA, VGA, CGA,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 디스플레이, 키보드 및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PC의 여러가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 최소한 75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에어서사는 IBM호환성을 갖춰주기 위해서는 IBM이 개발하고 특허낸 기본적인 디자인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모든 회사들이 IBM의 특허를 침해할 의도는 없었더라도 자사의 제품에

상이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IBM제품과의 호환성을 갖도록 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IBM특허의 디자인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차. 미국 Trident 마이크로 컴퓨터회사는 '瑞昱'반도체회사가 자기회사의 영업비밀을 훔쳤다고 고소하고, 검사의 기소를 거쳐 현재 '新竹'지방법원에서 심리중이다. Trident는 미국 본사의 비밀자료중에서 회사를 떠났던 溫씨성의 기술자가 그 회사의 비밀서류를 훔치고, 또한 대만의 어떤 사람이 그 제품을 복사했다는 소문이 퍼져서 현재 조사중이다. 당 회사는 '90년 5월 하순에 경찰과 같이 '瑞昱'회사를 수색하여 현장에서 VGA제품, 사용수첩, '瑞昱'반도체와 그 기술자사이에 오간 Fax자료를 압수하고 소식통에 의하면 Trident의 법률변호사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Trident의 VGA진행사항, 기타서류의 상세한 일정, 명칭 등 적지않게 Trident의 원본과 동일하였고 심지어는 서류상에 Trident회사의 기밀유지라는 글자가 찍혀있었다.

카. 대만 '全錄'회사는 현재 OSCAR컴퓨터의 인감대조 System을 판매하고 있는데 '和訊'회사의 마이크로 축소 촬영식 인감대조 System의 설비규격을 인정하고 성능을 분석비교하여 사용함으로써 '和訊'회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고발하고 법률의 순서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준비하였고, '全錄' 또한 인용된 자료는 모두 공개된 기록을 사용하였고, 그 중의 내용은 근거가 있는 것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모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6. 현재 외국 기업으로 부터 요구 받고 있는 사례

대만전자산업이 국제시장에서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된 문제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막강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제조회사는 대만이 제품의

발전 및 판매능력에 놀라서 대만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게임규칙을 지킬 것.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면서 빈번히 편지를 보내서 대만 전자기업에게 기술료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MS-DOS 및 IBM 등의 특허권에 금년에 외국회사는 일찍부터 서신을 보내어 경고하고 기술료를 받는다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는데 주요내용은 :

(1) '89년 11월에 미국의 Landmark Software라는 S/W 회사는 대만의 대리점을 통하여 대만회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처리 속도를 측정하는 CPU Speed Test S/W는 당회사의 지적재산권임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기술료를 지불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리점에 독촉하여 돈을 받아낼 것을 통보했다.

(2) 미국 Cadtrak社は '90년 1월부터 Video Chip의 기술료는 올렸다.

(3) TI(Texas Instrument)는 '89년 11월에 주요한 국내컴퓨터 제조업체에 서신을 통하여 PC제품 중의 부품에도 특허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대만회사에 기술료를 요구했다. 어떤 업자는 컴퓨터부품은 국외에서 수입한 것이므로 TI의 배상대상은 국외의 부품제조회사가 되어야지 국내의 컴퓨터회사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4) '90년 2월초에 대만의 滑鼠 컴퓨터회사는 Microsoft의 법률고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대만계의 滑鼠(활서)는 컴퓨터를 미국에 판매할 때에 반드시 기술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Microsoft사가 주장한 특허권은 2가지로 외형설계에 대한 특허권으로서 그 특허번호는 DES. 302426이고, 다른 하나는 486602번호의 미국 특허권을 滑鼠의 전원 공급장치에 관한 것으로 Signal Interface 방식을 통하여 전원을 얻을 수 있어 따로 전원공급장치가 필요했다. 지적한 것에 근거하여 전자의 외형설계에 대한 것은 국내사회가 같지 않는 외형을 제시하면 기술료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며, 후자는 '滑鼠'가 모두 S/W와의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료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5) '90년 3월 미국의 C & T는 다수의 IC 회사에 경고의 서신을 보내 미국에서 2개의 'Chip'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나는 4899272의 Addressing-Multiple Type of Memory Device이고, 다른 하나는 Page Interleaved-memory Access이다. C & T의 총재 등 및 법률고문 Micle-Jones가 4월에 방문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결심을 거듭 밝혔다. 따라서 대만의 SIS(Silicon Integrated System Corp.)사는 C & T사로 부터 공개적으로 지명받자 자사의 286 칩세트 판매를 중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만의 다수 생산업체는 Page Interleave Mode는 완전히 C & T사에 의해 개혁된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6) '90년 5월에 AT & T는 대만의 'TSMC' '聯華電子(Umited Microelectronics)' '華邦電子' 및 화릉Micro 전자 등의 IC제조회사에 편지를 보내 여러 제조 과정의 특허기술로 기술료를 받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였는데, 수개 항목의 특허 중에는 거의 모든 반도체회사에서 사용하는 전해액을 통한 식각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7) Motorola社는 수신허목의 Car-Phone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북미지역을 제외한 Car-Phone 제조회사들에게 기술료를 재촉하여 지불하도록 조치를 전개하고 있는데 '三光惟達(Sun Moon Star)'은 이미 경고 편지를 받고 이미 미국 법률변호사에게 문제 해결을 위임해 놓고 있다.

(8) PC용 마우스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사로 부터 마우스의 전력공급장치에 대한 특허 침해혐의로 기소될 형편에 처해 있다.

7. 대만의 특허문제 공동대응 동향

대만의 컴퓨터관련 기업은 몇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알게 모르게 침해한 특허 등 지적소유권에 대해 제소 당하였을 때 이들 업체들은 선진국에서 발전 되어온 지적소유권 관련법들에 대한 전문지식인력의 부족 및 기술적인 침해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술진의 부족으로 기술료 요구에 대해 당황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공동의 힘을 모으려고 애쓰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들 기업들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지원을 위해 III(Institute For Information Industries)에 법률전문가들을 10여명 채용하여 법률적 자문을 함과 동시에 이들 기업에 법률지식을 교육해주고 있다. 한편 기술적인 자문을 위해서 ITR(대만공업연구소) 산하의 ERSO(전자기술연구소)내의 기술진들로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생산업체들의 특허사건처리를 돕고 있었으며, TCA(대만컴퓨터협회)내에도 변호사를 별도 고용하여 대만업체들이 특허권을 주장하는 회사들과 협상할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대기업군에 속하는 ACER社 등 다수기업들도 미국이 변호사가 관장하는 15~25명 규모의 법률관련 부서를 설치하여 지적소유권 문제에 대응해 나아가고 있으며 점차 연구소, 정부 등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설치될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